

# 심 사 보 고 서

2010. 9. 14.

행정위원회

##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19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9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0. 9. 7) 상정 의결

##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 提 案 說 明 者 : 保 健 所 長 嚴 海 燾 )

### 가. 제안이유

- 최근 A형간염 대유행과 주의보와 관련, A형 간염검사를 신설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보건소 무료접종 확대에 따른 유료접종의 일부 종목을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과 어문 규정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건소 무료접종 확대에 따라 제2조제2항 별표 제4호의
  - “가목, 나목, 바목, 사목”을 삭제하고, “다목, 리목, 마목, 아목”을 각각 “가목, 나목, 다목, 리목”으로 변경.
  - 가목의 “간염”을 “B형 간염 접종”으로 하고 “성인”과 “소아”로 구분.
- 제2조제2항 별표 제5호의 “가목 간염검사”를 “A형 간염검사”, “B·C형 간염검사”로 구분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명시.

- 제2조제2항 별표 “제6호 구강보건과 진료비”를 “제6호 구강보건실 진료비”로 하고 “가목”을 삭제.
- 제2조제2항 별표 내 삭제된 항목을 정비하여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로 하고, “제7호, 건강증진센터”와 “제8호, 골밀도실”을 통합하여 “제6호, 측정수수료”로 변경.
- 안 제3조제2항제7호에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으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면제근거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제7호, 제8호”를 각각 “제8호, 제9호”로 변경.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현 영)

-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에 대한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A형 간염검사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과 더불어 유료접종 중 무료접종으로 확대된 종목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조례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2항의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한 관련 별표 내 간염 관련 항목 신설 및 세분화와 수수료 구분, 유료접종에서 무료접종으로 변경된 항목 삭제 및 항목번호 정비로 보기 쉽게 하였으며,
  - 안 제3조제2항제7호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신설하여 경로우대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근거를 명시하였음.
  - 안 제3조제4항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거주지 지역제한이 없던 것을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제한하였음.
  -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6 호
----------	-------

제출연월일 : 2010.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최근 A형간염 대유행과 주의보와 관련, A형 간염검사를 신설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건소무료접종 확대에 따른 유료접종의 일부 종목을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수수료 및 진료비의 종목을 현실에 맞게 각 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함(안 제2조제2항)
- 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을 전염병예방법 내용에 맞추어 “유료접종”란의 일부 접종종목을 수정 및 삭제함(안 제2조제2항 별표 중 제3호)
- 다. A형 간염검사를 신설 실시하게 됨에 따라 “검사”란의 “가. 간염검사”를 “A형 및 B형·C형 간염검사”로 구분함(안 제2조제2항 별표 중 제4호)
- 라.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의 통일된 A형 간염검사 수수료 징수 기준 마련을 권고하여, A형 간염검사 수수료를 당해연도 검사시약 원가구매가격으로 정함(안 제2조제2항 별표 중 제4호)
-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B형·C형 간염검사 수수료를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에 준함(안 제2조제2항 별표 중 제4호)
- 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내용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제7호)
-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과 어문규정에 맞도록 해당 조문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을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0.06.25 ~ 07.14.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5. 검사
6. 구강보건실 진료비
7. 측정 수수료

제3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을 “제2조제2항의 별표 중 제3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각 호 중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복지법에 정한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을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우대 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 제7호에 따라”로,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부담하는 약제비는”을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약을”로 한다.

7.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수 수 료 액 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가.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건강진단수첩과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카항을 더한 수수료액 으로 한다.
	나.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다.일반진단서	1통	500원	
	라.특별진단서	1통	2,000원	
	마.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바.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사.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첩 또는 진단서	1통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아.사망진단서	1통	500원	
	자.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차.결핵진단서	1통	300원	
	카.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타.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	
	파.1통초과 발급	1통	100원	
	하.X-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	1매(CD)	3,000원	
2. 항결핵제 보급	가.초치료 처방 에탐부톨+아이나+피라 지 나미드+리팜피신 6 에스엠+아이나+리팜 피신 +파라지나미드 6 에 탐 부 톨 +아 이 나 +리 팜 피 신 9 에 스 엠 +아 이 나 +리 팜 피 신 9 에 탐 부 톨 +아 이 나 +리 팜 피 신 6 에 스 엠 +아 이 나 +리 팜 피 신 6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2,000원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나.재치료 처방 피라지나미드 +파스 +에스엠 에탐부톨 +피라지나 미드+리팜피신 에탐부톨 +피라지나 미드+카나마이신 피라지나미드 +리 팜 피신+카나마이신 에탐부톨 +리 팜 피 신 +카나마이신 에탐부톨+피라지나미드 에탐부톨+리팜피신 리팜 피 신 +피 라 지 나 미드+에탐부톨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2,000원	
3.유료접종	가.B형 간염 접종 1)성인 2)소아 나.장티푸스	1ml 0.5ml 0.5ml	가.보건소의 유료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의 경우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 으로 한다. 나.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병 ·의원의 접종 수수료는 약품공급가격과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일본뇌염접종은 피하 근육주사를 적용한다. 단, 10자리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준 한다.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다.신증후군출혈열	0.5ml	다.전항에 의한 지정 병의원에서의 유료접종 약품공급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	
	라.인플루엔자	0.5ml	라.금액은 위의 가-다항과 동일함.	
4.검사	가. 간염검사 1) A형 간염검사	1회	검사 수수료는 당해 연도 검사시약 원가구매가격 (검사시약비+재료비) 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의 경우, 1원이상 49원까지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까지는 100원으로 한다.	
	2) B·C형 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의과 1회 방문당 금액에 의한 수수료액)에 준한다.	
	나.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다.암표지자검사 · AFP	1회	6,000원	
	· CEA	1회	6,000원	
	· PSA	1회	6,000원	
	· CA125	1회	6,000원	

구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5. 구강보건실 진료비	불소도포 진료비	1회	당해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초과 1회 방문당급여에 의한 수수료	단, 시술 상· 하악 당 1회로 산정한다.
6. 측정 수수료	가. 체력측정 수수료	1회	3,300원	비의료보험 적용대상임
	나. 골밀도측정 수수료	1회	6,600원	비의료보험 적용대상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u>제14조의 규정에 의한</u>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b>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u>제42조의 규정에 의한</u>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생 략)</li> <li>5. 기타</li> <li>6. <u>구강보건과 진료비</u></li> <li>7. <u>체력측정 수수료</u></li> <li>8. <u>골밀도측정 수수료</u></li> </ol> <p>③ (생 략)</p> <p><b>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b>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u>제3조의 규정에 의한</u>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u>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u> 수수료를 면제한다.</p> <p>②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6. (생 략)</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li> </ol>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u>제14조에 따른</u>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b>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u>제42조에 따른</u>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현행과 같음)</li> <li>5. <u>검사</u></li> <li>6. <u>구강보건실 진료비</u></li> <li>7. <u>측정 수수료</u></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b>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u>제3조에 따른</u>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u>제2조 별표 중 제3호에서 정한</u> 수수료를 면제 한다.</p> <p>②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6. (현행과 같음)</li> <li>7. <u>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u></li> <li>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li> </ol>

<p>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p> <p>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p> <p>③ <u>노인복지법에 정한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u>,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체력측정 및 골밀도측정 수수료는 구청장이 감면한다.</p> <p>④ <u>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u> 진료비를 면제하는 <u>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u>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p>	<p>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 임무수행 자와 그 유가족</p> <p>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p> <p>③ 「<u>노인복지법</u>」에서 정한 <u>경로우대 노인</u>, 「<u>장애인복지법</u>」에서 정한 <u>장애인</u>,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체력측정 및 골밀도측정 수수료는 구청장이 감면한다.---</p> <p>④ <u>제2항제7호에 따라</u> 진료비를 면제하는 <u>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중 서울 특별시 거주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약을</u>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p>
--	--

[별표]

[별표]

현행 수수료액표					개정안 수수료액표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가.~바. (생략) 사.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수첩 또는 진단서 아.~과. (생략) 하. X-선 필름 사본 발급	(생략)  1매(14x14인치)	(생략)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생략)	(생략)	1.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가.~바. (현행과 같음) 사.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수첩 또는 진단서  아.~과. (현행과 같음) 하.X-선 의료영상 사본발급	(현행과 같음)  1매(CD)	(현행과 같음)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삭제									
3.항결핵제 보급	○초치료처방 (생략) ○재치료처방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항결핵제 보급	가. 초치료처방 (현행과 같음) 나. 재치료처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유료접종	가.일본 뇌염 나.홍역, 볼거리, 풍진 다.간염 <신살>	1ml 혼합 백신 1회분 1ml <신살>	(생략)	(생략)	3.유료접종	<삭제>  <삭제>  가.B형간염접종 1)성인	<삭제>  <삭제>  <삭제> 1ml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라. 장티푸스 마. 유행성출혈열 바. 램프도스피라증 사. 디프테리아 아. 인플루엔자	<신설> 1인분 0.5ml 1ml 0.5ml (도스) 0.5ml			2) 소아 나. 장티푸스 다. 신증후군출혈열 <삭제> <삭제> 라. 인플루엔자	0.5ml 0.5ml 0.5ml <삭제> <삭제> 0.5ml			
5. 검사	가. 간염검사 <신설> <신설>	1회 <신설> <신설>	당해연도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의과 1회 방문당급여에 의한 수수료	4. 검사	가. 간염검사 1) A형 간염검사 2) B형·C형 간염검사	<삭제> 1회 1회	검사 수수료는 당해 연도 검사시약 원가 구매가격(검사시약비+재료비)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의 경우, 1원 이상 49원까지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까지는 100원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 의과 1회 방문당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에 준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수질검사 (생략)	(생략)	(생략)		나. 수질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압표지자검사 (생략)	(생략)			다. 압표지자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6.구강보건 과 진료비</u>	가.치면 연구 진색 진료비	1회	보건소 초과 1회 방문당 수가 총 진료비 전액	비보험급여대 상진료이지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활성 화를 위해 보건 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산정	<u>5.구강보건 실 진료비</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나. 불소도 포진료 비								
<u>7.건강증진 센터</u>	가.체력 측정 수수료	(생략)	(생략)	(생략)	<u>6.측정 수수료</u>	가.체력측정 수수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과 같음)
<u>8.골밀도실</u>	나.골밀 도측정 수수료	(생략)	(생략)	(생략)		나.골밀도측정 수수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과 같음)